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478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조건(안 제21조의4 신설)

- 1)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을 별표1에 규정
- 2) 투자진흥지구 지역 조건을 ① 「우주개발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②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③ 별표1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정함

나.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규정(안 제21조의5 신설)

-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절차 규정(안 제21조의6 신설)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방법 규정(안 제21조의7 신설)

-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8 신설)

-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10년(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는 5년)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청문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바.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21조의9 신설)

- 1) 투자진흥지구 내 매입 및 시설의 건축 시 그 필요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함.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9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조건)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3. 별표1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제21조의5(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5.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재원조달계획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정한 사항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3조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투자자(제2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투자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2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2.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또는 투자자의 투자 계획 철회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투자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 일자 및 지정 해제 사유

제21조의9(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창출 효과
2. 인구유입 유발효과
3.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중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 1, 별표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4. 2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의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 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가. 제조업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사업
 - 다. 전기통신업
 - 라.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바.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자.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종 또는 사업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령 위반 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호	200	400	800

나.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2호	200	400	800
다.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 제1호	100	200	400
라.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3호	200	400	800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 제2호	100	200	4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조건)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u><신 설></u>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3. 별표1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제21조의5(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	--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 5.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재원조달계획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정한 사
--	---

<신 설>	항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3조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
--------------------	--

<신 설>	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 투자자(제21조의5제2 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야 한다. ②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 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 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우주 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	--

<신 설>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 해 투자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해 야 한다. 제2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 년을 말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 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 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 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 한 2.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또는 투 자자의 투자 계획 철회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 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	---

<신 설>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투자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 일자 및 지정 해제 사유 제21조의9(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
--------------------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창출 효과 2. 인구유입 유발효과 3.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연 락 처	(055) 856 - 4351